

史部分類의 諸問題

——主로 關聯된 諸類屬間的 分類限界에 置重하여——

千 惠 鳳*

緒 言

學問의 分類에 있어서 東洋에는 東洋대로의 傳統的인 여러 分類法이 일찌기 創案되어 傳承 發展해 왔고, 西歐에는 西歐대로의 獨特한 여러 分類法이 制定되어 또한 多樣하게 展開되어 왔다. 그 內容과 組織方法은 東·西洋에 있어서의 學問의 性格과 黃白人의 思考方式에 따라 크게 差異가 있지만, 그러나 分類 그 自體가 지니는 目的과 機能은 彼此가 서로 一樣하다.

文獻의 分類가 본시 同一한 主題 또는 體例(編纂形式)의 것을 한곳에 類聚하고 關聯된 主題 또는 體例의 것을 繫屬토록 組織하는 作業이고 보면, 그 窮極의 目的과 機能이 文獻의 迅速 正確한 檢索과 最大限의 活用을 圖謀함에 있음은 再言할 나위도 없다.

最近 東洋學 乃至 韓國學의 研究는 國內外에서 자못 活潑해졌고 그에 따라 그 間 影印 또는 排印에 의한 複製를 위시하여 註解 評釋 翻譯 및 多樣하게 穿鑿한 論文들이 量產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刮目할 만한 進展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때에 즈음하여 圖書館 當事者들도 그 學術活動을 더욱 促進시켜 주기 위해 專門職 司書로서 應當 遂行하여야 할 이 分野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七略 以來 各 歷朝에서 슬하에 著錄된 各種 書目的 分類法을 두루 涉獵 習得해서, 分類에 있어서는 그것이 現代式 十進法에 의하든 四部法 또는 獨自의인 分類法에 의하든 間에 客觀的인 位置에 分類하여 올바르게 文獻을 찾아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고, 文獻奉仕에 있어서도 檢索코자 하는 곳으로 곧장 案内되어 必要로 하는 文獻情報를 바람직하게 얻어 適期에 傳達할 수 있도록 하는 知識과 能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東洋의 在來 書目은 同一한 書名 또는 主題의 文獻이라 할지라도 時代 또는 著錄者에 따르는 組織方法의 差異로 多樣하게 分類된 것이 적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副教授.

지 않으니, 이 分野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傳統的인 分類法의 全般에 걸쳐 各 類屬의 內容 性格 및 關聯性을 知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分野의 研究와 教育의 必要性이 提起되고 強調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筆者로 하여금 四部法中 가장 複雜한 史部부터 그 淵源과 性格 그리고 關聯된 諸類屬間의 分類限界를 考察케 한 主된 所以이다.

1. 史部の 淵源 및 性格

漢書藝文志 六藝略 春秋의 後敍에

「古之王者 世世有史官 君舉必書 所以慎言行 昭法式也 左史記言 右史記事 事爲春秋 言爲尚書 帝王靡不同之¹⁾」

라 있듯이, 옛적의 王者에게는 代代로 史官이 있어 王者가 舉動하면 반드시 이를 記錄하였다. 그것은 王者가 言行을 삼가하여 法式을 百姓에게 昭示해 주기 위함이었다. 左史는 王이 말한 것을 記錄하고 右史는 王이 行動한 일을 記錄하였는데, 그 中前者를 尚書, 後者를 春秋라 일컬었다.

이렇듯 尚書와 春秋를 左右二史라 했지만, 尚書는 事實을 襲承하고 君臣이 相對한 問答之言만을 累載한 體로 되어 있으며, 春秋는 事之始末을 年次로 排比하여 體例 文體 및 義例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後者를 歷史의 淵源으로 삼고 古史體라 일컬었던 것이다.

前掲한 漢書藝文志의 春秋 끝에 「國語 新國語 世本 戰國策 奏事 楚漢春秋 太史公 馮商所續太史公 太古以來年記 漢著記 漢大年記²⁾」등의 史記와 舊事類를 附入시킨 것도 벌써 漢代에 春秋가 史部の 濫觴으로 認定된데서 基因하는 조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本義가 魯史記를 素材로 獨特한 春秋의 筆法을 適用시켜 倫常秩序를 宣揚하고 亂臣賊子를 두렵게 하려는바, 말하자면 孔子의 敎訓을 廣布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史部에 分類하지 않고 그 意圖에 따라 經部에 列入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春秋에 史記類가 附入된 것은 본시 漢志 編纂의 底本이 되었던 前漢末 劉歆 所撰의 東洋 最古의 書目 七略³⁾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宋元徽元年(473)에 秘書丞 王儉이 編纂한 七志에 이르기까지 承襲되었다. 즉

1) 班固. 漢書藝文志 六藝略 春秋 後敍. 香港, 太平書局, 1963. p. 13.

2) 上掲書 六藝略 春秋. p. 12~13.

3) 上掲書 總敍. p. 2.

「一曰 經典志 紀六藝 小學 史記 雜傳⁴⁾」과 같이 春秋가 들어 있는 經典 끝에 史記와 雜傳이 附入되어 있음이 바로 그 例證이 된다.

史記類가 經典에서 分離된 것은 傳存하는 文獻에 의하면

「魏氏代漢 采掇遺亡 藏在秘書中外三閣 魏秘書郎鄭默 始制中經 秘書監荀勗 又因中經更著新簿 分爲四部 總括群書 一曰 甲部 紀六藝 及小學等書 二曰 乙部 有古諸子家·近世子家·兵書·兵家·術數 三曰 丙部 有史記·舊事·皇覽簿·雜事 四曰 丁部 有詩賦·圖讚·汲冢書 大凡四部 合二萬九千九百四十五卷⁵⁾」

과 같이, 魏의 秘書郎 鄭默이 宮中藏書를 整理하여 엮은 中經簿를 土臺로 晉 때 秘書監 荀勗이 更著한 新簿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歷史關係가 甲部의 六藝及小學等書에서 分離되어 丙部로 獨立 新設되고 그 內容도 史記 舊事 以外에 皇覽簿 雜事등이 더 增加되었다. 類書인 皇覽簿가 어째서 史記類와 함께 丙部에 分類되고, 한편 汲冢書中에 들어 있는 紀年十三篇 따위가 어째서 丙部에 들지 않고 丁部에 列入되어 있느냐 하는 問題가 指摘되기는 하나, 어쨌든 史記類가 獨立 新設된 것만은 여기서 初見되는 一大特記事項이다.

또 그 後 東晉 初에 著作郎 李充이 惠·懷의 亂으로 흩어진 典籍을 鳩集하여 엮은 書目을 보면

「惠·懷之亂 其書略盡 江左草創 十不一存 後雖鳩集 淆亂已甚 及著作佐郎李充 始加刪正 因荀勗舊簿四部之法 而換其乙丙之書 沒略衆篇之名 總以甲乙爲次⁶⁾」

라 있듯이, 上引한 荀勗의 分類法을 그대로 따르되 乙部の 書와 丙部の 書를 바꾸어 甲乙丙丁의 次序로 매졌으니, 결국 乙部の 書가 史記類이며 經典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李充 以後에도 宋 元嘉 8年(431)에 秘書監 謝靈運이 엮은 書目을 비롯하여 梁의 秘書監 任昉 殷鈞 撰의 書目⁷⁾도 四部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史記類가 獨立되어 있음은 勿論이거니와, 그 外의 書目에 있어서도 前揭한 七志를 除外하고 史記類가 獨立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梁의 普通年間(520~526)에 나온 阮孝緒 撰의 七錄에 있어서도 「紀傳錄 內篇二」의 獨立部門이래에 「國史部 注曆部 舊事部 職官部

4) 長孫無忌 等撰. 隋書 卷 32 經籍志 1.

5) 上揭書 經籍志 1.

6) 阮孝緒. 七錄序(廣弘明集 卷 3. 所收)

7)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經籍志 1.

儀典部 法制部 僞史部 雜傳部 鬼神部 土地部 譜狀部 簿錄部」의 諸部가 多樣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⁸⁾

四部法에 있어서 經史子集의 名稱이 正式으로 使用되어 그 土臺가 구축된 것은 隋書經籍志에 이르러서이며, 여기서 史部의 名稱⁹⁾과 性格이 確定된 以後는 四部法이 主用되는 한편 史書의 撰述도 盛行되어 그 資料가 浩繁해지게 되었다. 그 結果 史部의 內容이 細分되기 시작하여 清代의 四庫全書總目에 이르러서는 總15類로 列目分編되었으니,

「首曰正史 大綱也 次曰編年 曰紀事本末 曰別史 曰雜史 曰詔令奏議 曰傳記 曰史鈔 曰載記 皆參考紀傳者也 曰時令 曰地理 曰職官 曰政書 曰目錄 皆參考諸志也 曰史評 參考論贊也¹⁰⁾」

云云함이 바로 史部의 細部內容이며 그 要解이다.

上引의 內容을 剖析 檢討해 볼 때 史部란 正史體인 紀表志傳 體例의 史書를 根幹으로 삼고 編年體 史書 以下 載記까지의 8類를 그 中 紀와 傳에 대한 參考資料, 時令 以下 目錄까지의 5類를 그 中 志에 대한 參考資料로 하여 차례로 列目分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史評의 1類는 正史의 論贊에 參考가 된다고 하여 後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史部는 主題의 理論的인 體系에 따라 展開한 것이 아니라 紀傳體를 中心으로 한 體例爲主의 展開 즉 正史의 編纂形式을 中心으로 細分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傳統的인 四部法에 있어서 史部가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性格이며 特徵이다.

위에서 史部의 淵源 및 그 變遷 그리고 傳統的인 四部法에 있어서의 史部의 內容 및 性格을 考察하였거니와, 다음으로는 史部를 中心으로 하여 諸類屬間에 相互關聯이 있는 分類問題만을 들어 그 限界性を 살펴 보고자 한다.

2. 正史類와 別史類

正史는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紀表志傳의 體制로 엮어진 것으로서, 官이 標準的인 史書로 編修하였거나 定한 것을 말한다. 紀表志傳에 있어서 紀는 帝王 中心의 時事를 記錄한 帝紀 또는 本紀이고, 表는 年表, 志는 文物制度를 總錄한 것이며, 傳은 傳記를 뜻한다. 이렇듯 正史는 그 體

8) 阮孝緒. 前揭書 自序.

9)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經籍志.

10) 四庫全書總目提要 卷45 史部 總敘.

제가 紀表志傳의 次序로 編纂되었기 때문에 一名 紀傳體 史書라고도 일컫고 있다.

正史類는 隋書經籍志에서 처음으로 붙여진 名稱이며,¹¹⁾ 馬記와 班書가 그 祖本이 된다. 唐代에 三史, 宋代에 十七史, 明代에 宋史 遼史 金史 元史를 합쳐 二十一史, 淸 乾隆年間(1736~1795)에 明史 舊唐書 舊五代史를 詔增시켜 二十四史¹²⁾ 그리고 이에 新元史를 追加시켜 現在는 二十五史가 傳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三國史記와 高麗史의 2種만이 正史類에 屬한다.

正史類는 위에서 든 것이 그 主體임은 勿論이나 그 외에도

「其他訓釋音義者 如史記索隱之類 掇拾遺闕者 如補後漢書年表之類 辨正異同者 如新唐書糾繆之類 校正字句者 如兩漢刊誤補遺之類 若別爲編次 尋檢爲繁 即各附本書 用資參證¹³⁾

이라 있듯이, 正史를 訓釋하거나 音義한 것, 正史의 遺闕을 掇拾한 것, 正史의 異同을 辨正한 것, 正史의 字句를 校正한 것 등도 아울러 列入시켜 參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대 正史類에는 官에서 編修 또는 定한 紀傳體 正史를 비롯하여 그 正史를 音訓 校正 辨正 補修한 後世의 著撰도 함께 分類되는 것이 常例이다.

別史類는 隋書經籍志에 未設되고 宋代의 陳振孫 撰인 直齋書錄解題에 이르러 처음으로 新設되었다.¹⁴⁾ 그 內容과 性格은

「以處上不至於正史 下不至於雜史者 義例獨善 今特從之 蓋編年不列於正史 故凡屬編年 皆得類附 史記漢書以下 已列爲正史矣 其歧出旁分者 東觀漢記·東都事略·大金國志·契丹國志之類 則先資草創 逸周書·路史之類 則互取證明 古史·續後漢書之類 則檢校異同 其書皆足相輔 而其名則不可以並列 命曰別史¹⁵⁾」

云云과 같이, 正史類에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雜史類로 떨어트릴 수도 없는 말하자면 正史에서 歧出旁分된 別支의 性格을 띤 史書를 말한다. 이를 좀 더 詳言하면, 첫째, 正史의 起草에 利用된 것 이룰때면 東觀漢記 東都事略 大金國志 契丹國志라든가, 둘째, 正史와 더불어 證明에 互取될

11) 長孫無忌 等撰. 前掲書 卷33 經籍志28 史部 正史類.

12) 四庫全書總目提要 卷45. 史部1. 正史類敍.

13) 上掲書 卷45 史部 1 正史類敍.

14)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史部 別史類.

15) 四庫全書總目提要 卷50 史部6 別史類敍.

수 있는 것 이룰데면 逸周書 路史라든가, 셋째, 正史 內容의 異同을 檢校하는 데 利用될 수 있는 것 이룰데면 古史 續後漢書등과 같이 正史를 相輔할 수 있는 性格의 資料가 바로 別史類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런데 長澤規矩也教授는 이 別史類를 紀傳類로 바꾸고 있어 注目케 한다.¹⁶⁾ 이것은 別史類가 正史類에서 歧出旁分되었다 하여 그 全部를 紀傳體史書로 看做한데서 基因하는 措處임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이 處理하면 紀傳體 史書中 하나는 正史類가 되고 다른 하나는 正史 以外的 紀傳類가 되는 바, 後者が 바로 別史類에 該當한다고 여긴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여기서 指摘할 것은 別史類가 正史類에서 歧出旁分했다 하여 그 全部를 반드시 紀傳體 史書로 斷定할 수 없다는 點이다. 四庫全書總目的 別史類中 上引의 東觀漢紀 續後漢書 東都事略 契丹國志 路史 古史 따위는 紀傳體 또는 그 體에 準據하여 纂修한 것임에 틀림 없으나, 그러나 그 外의 것 中에는 編年紀事인 實錄體例의 「建康實錄」과 諸史中에서 大事를 擇하여 綱으로 삼고 그 아래에 該當 原文을 彙括해서 目으로 한 「廿二史紀事提要」가 있는가 하면, 紀事本末體와 相似한 體例로 엮어진 「徵吾錄」이 있고, 또한 史圖인 「讀史圖纂」이 있는가 하면, 歷代帝王의 世系 年號 歲數인 「歷代帝王纂要譜括」, 明代世系인 「天潢玉牒」 冊立年月 生辰 壽數 諡號 山陵의 記錄인 「明帝后紀略」등과 같은 系譜 紀略類와, 「欽定歷代紀事年表」 「歷代史表」 「遼代臣年表」 「金大臣年表」등과 같은 史表類도 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¹⁷⁾ 그 중 世系 紀略 및 史表類는 紀傳體 史書의 紀와 表의 範疇에 屬하므로 이를 또한 且置한다 하더라도 其他의 것은 紀傳體 史書의 體例와는 아예 判異하다.

따라서 別史類라는 概念은 體例보다도 正史의 起草에 利用되었거나, 그 考證에 互取되고 또한 그 內容의 異同을 檢校하는 데 있어서 正史를 相輔할 수 있는 史書類라고 規定함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름에 있어서 바로 正史를 校正 辨正 補修한 前引의 後世 著撰인 正史類¹⁸⁾와는 混沌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注意를 要한다.

3. 編年類와 實錄·起居注類

編年體 史書는 「編年者 以事繫年 詳一國之治體 蓋本左氏¹⁹⁾」와 같이 歷

16) 長澤規也, 和漢古書分類法(無刊記) p. 27.

1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50 史部6 別史類 書目.

18) 註 13)의 引用文을 參照할 것.

19) 國史經籍志 史部 編年敍.

史的인 事件을 年代順으로 繫述한 것으로서 본시 春秋의 體例를 본 만 것이다.

春秋는

「春秋編年 四時具 然後爲年 上尊天紀 下正人事²⁰⁾」

云云과 같이, 事實을 日月順으로 春夏秋冬의 四時에 걸쳐 記述하고 그것이 年次로 反覆되고 있으니, 그 體例가 곧 編年類인 것이다. 春秋의 體는 班馬의 史體에 의해 끊긴 바 있지만, 晉의 荀悅이 漢紀를 編修함으로써 復活을 본 以後 繼承되었기 때문에,²¹⁾ 宋代에 있어서는 司馬光의 資治通鑑과 같은 大作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렇듯 이 體例는 班馬의 그것에 앞서 淵源되었기 때문에 古史體라고도 일컫고 있으며, 隋書經籍志에 의해 처음으로 採擇되었다.²²⁾ 그러나 한편 同志에 起居注類는 獨立의으로 마련되어 있고²³⁾ 實錄은 雜史類에 並入되었다.²⁴⁾ 이것은 같은 編年體 史書의 分散임이 指適된다. 그 後 舊唐書經籍志에 이르러서는 起居注類에 實錄이 並入되고²⁵⁾ 宋代의 崇文總目에서는 實錄類가 別設되기도 하였으나²⁶⁾ 四庫全書總目에 이르러 그 體例가 모두 編年體에 屬하므로 마침내 編年類아래에 統合되었다.²⁷⁾

하기야 史部의 組織이 編修의 體例 爲主로 展開되어 있으니, 實錄과 起居注등도 編年類에 함께 分類하는 것이 至當함은 再言할 나위도 없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朝鮮王朝實錄을 編年類에 넣고 있음도 바로 體例中心의 分類인 것이다.

4. 紀事本末類와 雜史類

紀事本末體의 淵源을 尚書에 두고 있는 이도 있지만, 그 名稱이 始命되고 三體中의 一體로서 公認을 받게 된 것은

「古之史策 編年而已 周以前無異軌也 司馬遷作史記 遂有紀傳一體 唐以前亦無異軌也 至宋袁樞 以通鑑舊文每事爲篇 各排比其次第 而詳敘其始終 命曰紀事本末 史遂又有此一體……遂於二體之外 別立一家 今亦以類區分

20) 春秋 穀梁傳.

21) 王堯臣等編, 崇文總目 卷2 編年類後原註.

22) 長孫無忌 等撰, 前漢書 卷33 經籍志2 史部 古史類.

23) 上揭書 卷33 經籍志2 史部 起居注類.

24) 上揭書 經籍志2 史部 雜史類의 「梁皇帝實錄三卷」 및 「梁皇帝實錄五卷」 參照.

25) 劉昫, 舊唐書 卷46 經籍志26 上 起居注類.

26) 王堯臣等編, 前漢書 卷2 實錄類.

2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47 史部3 編年類註.

使自爲門目²⁸⁾」

과 같이, 宋 때 袁樞가 撰述한 通鑑紀事本末 42卷에 의해 비롯한다. 紀事本末體란 每事를 篇으로 하여 그 次第대로 각각 排比하고 그 自初至終을 詳敍한 史體를 말한다. 그리고 그 體例는

「凡一書備諸事之本末 與一書具一事之本末者 總彙於此 其不標紀事本末之名而實爲紀事本末者 亦併著錄」²⁹⁾

과 같이 諸事를 句括하든 혹은 一事만을 다루든 間에, 또 그 名稱의 標識가 있는 없는 間에, 實際에 있어서 紀事本末體로 成編되어 있다면 모두 本 史體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 例로서 通鑑紀事本末 以外에 春秋左氏傳 事類始末 宋史紀事本末 元史紀事本末 三朝北盟會編 明史紀事本末 蜀鑑 釋史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燃藜室記述 華海彙編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四庫全書總目에 의하면, 비록 一事의 始末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偶然한 記事로서 篇幅이 많지 않은 것은 雜史 또는 傳記에 屬하며, 紀事本末類에는 列入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大抵取其事繫廟堂 語關軍國 或但具一事之始末 非一代之全編 或但述一時之見聞 祇一家之私記 要期遺文舊事 足以存掌故資考證 備讀史者之參稽 云爾」³⁰⁾

와 같이, 紀事의 內容이 廟堂과 軍國에 관한 것으로서 그 體例가 一事의 始末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一代의 全編이 아니거나, 한 때의 見聞을 記述한 一家의 私記인 遺文舊事의 要期는 掌故를 傳存시켜 故事의 考證과 讀史者의 參考에 資備케 하므로 雜史類에 分類한다고 하였다.³¹⁾ 이를테면 貞觀政要 渚宮故事 北狩見聞錄 孤臣泣血錄등과, 우리 나라의 壬辰亂 始末要記인 懲愆錄 亂後雜錄을 비롯하여 東學亂의 始初부터 全瑋準의 逮捕에 이르기까지의 內容을 적은 南征錄등을 들 수 있다. 紀事本末類와 雜史類의 分類限界를 가름하는 問題는 史部 分類와 四部法으로 組織된 書目에서 文獻을 檢索할 때 특히 留意하여야 할 事項이 된다.

5. 雜史類와 關聯된 諸類屬

雜史類의 淵源에 관하여는 隋書經籍志 雜史敍中에

2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49 史部5 紀事本末類敍.

29) 上揭書 卷49 史部5 紀事本末類敍.

30) 上揭書 卷51 史部7 雜史類敍.

31) 潤松文庫漢籍目錄에서 「清國戊戌政變記」를 紀事本末類에 넣은 것은 잘못이며, 徐有渠撰 鑿板考에서 「懲愆錄」 「晉州敘事」를 雜史類에 分類한 것과 같이 處理하여야 한다.

「自後漢以來 學者多鈔撮舊史 自爲一書 或起自人皇 或斷之近代 亦各其志 而體制不經 又有委巷迂怪妄誕 眞虛莫測 然其大抵皆帝王之事 通人君子 必博采廣覽 以酌其要 故備而存之 謂之雜史」³²⁾

라 있듯이, 後漢 以後 學者들이 舊史를 鈔撮하여 成書함이 繁多해져서 그 體制가 올바른 史策의 例를 벗어나고 또한 內容이 迂怪妄誕하여 그 眞僞를 가름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帝王에 관한 記事가 있어 人君들에 의해 博采廣覽되어 그 旨要가 參酌되니 이로 말미암아 이들 資料가 備存하게 되었던 바, 이것이 바로 隋志에 이르러 雜史類가 新設된 濫觴이다.

그 雜史類의 性格에 관하여는 四庫全書總目에

「蓋載籍既繁 難於條析 義取乎兼包象體 宏括殊名……大抵取其事繫廟堂 語關軍國」³³⁾

이라 있듯이, 體制上으로는 殊名을 浩繁하게 包括한 象體의 것이나, 그 뜻은 어디까지나 朝廷과 軍國에 관한 것이리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雜史類는 義例를 重視한 象體인 까닭에 下記의 諸類屬中 특히 雜說 雜事 異聞의 諸屬과의 分類限界를 가름하기가 매우 어렵다.

雜史類와 關聯된 諸類屬과의 分類限界의 가름에 있어서,

첫째, 紀事本末類와의 限界問題가提起되나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言及한 「紀事本末類와 雜史類」의 內容을 參考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別史類와의 分類限界를 가름하는 問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別史는 既述한 바와 같이 그 性格이 正史와 雜史의 사이에 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正史와의 區別은 比較的 辨易하나 雜史와의 그것은 좀 까다로운 것에 屬한다. 書目答問에서 그 限界를 가름하기를

「別史·雜史 頗難分析 今以官撰及原本 正史重爲整齊 關繫一朝大政者 入別史 私家記錄中 多碎事者 入雜史」³⁴⁾

와 같이, 官撰 및 原本 正史를 다시 整齊한 것으로서 한 歷朝의 大政에 關繫된 것은 別史에 該當하고 私家의 記錄中 自질구레한 事件을 다룬 것은 雜史에 分類한다고 하였다. 自질구레한 事件이라 함은 特定事의 始末, 一時의 見聞, 史譚, 史의인 漫筆 및 雜錄등의 私記를 말하는 것이나,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어느 것이나 政事와 軍國에 관한 것으로서 故實의 考證

32) 長孫無忌 等撰. 前漢書 卷33 經籍志2 史部 雜史類敍.

33) 四庫全書總目提要 卷51 史部7 雜史類敍.

34) 張之洞. 書目答問補正, 范希曾補正. 台北, 新與書局, 民國45(1956) 卷2. p. 10.

과 讀史者의 參考에 이바지되는 것이어야 함은 勿論이다.³⁵⁾

셋째, 雜家類 雜說之屬과의 가름은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고 이미 言及하였다. 雜家者의 流는

「取儒墨名法 合而兼之 其言貫穿衆說 無所不通 然亦有補於治理 不可廢焉」³⁶⁾

과 같이, 諸家의 立說을 합하고 兼한 것으로서 그 말은 衆說을 두루 貫穿하고 있으나, 그 中에는 治理에 도움이 되는 資料가 들어 있다. 四庫全書 總目에 있어서는

「雜之義廣 無所不包 班固所謂合儒墨 兼名法也 變而得宜 於例爲善 今從其說 以立說者 謂之雜學 辨證者 謂之雜考 議論而兼敘述者 謂之雜說 旁究物理 臚陳纖瑣者 謂之雜品 類輯舊文 塗兼衆軌者 謂之雜纂 合刻諸書 不名一體者 謂之雜編 凡六類」³⁷⁾

와 같이 雜學 雜考 雜說 雜品 雜纂의 5屬으로 細分하고 있는데, 그 中 바로 雜說의 屬이 雜史와의 限界를 가름하기 어려운 部分이다. 그 雜說이란 「案雜說之源 出於論衡 其說或抒己意 或訂俗謬 或述近聞 或綜古義 後人沿波 筆記作焉 大抵隨意錄載 不限卷帙之多寡 不分次第之先後 興之所至 即可成編 故自宋以來 作者至夥 今總彙之爲一類」³⁸⁾

와 같이, 그 淵源이 漢의 王充 撰인 論衡에서 비롯하여 혹은 自己의 意見を 開抒하고 俗謬를 訂正하거나 혹은 近聞한 것을 記述하고 古義를 綜合한 것으로서, 後人들이 承傳시켜 筆記한 說들이다. 대체로 隨意錄載한 것으로 卷帙의 多寡에 制限을 받지 않고 또 編次의 先後도 나누지 않고 있으며 떠오르는 바에 따라 成編한 것이 그 特徵이다.

따라서 雜多한 主題에 걸쳐 「議論而兼敘述」하되, 대체로 떠오른 바를 「隨意錄載」의 形式으로 卷帙의 多寡에 制限을 받지 않고 또 編次의 先後도 나누지 않은 채 成書한 것은 모두 이 雜說의 屬에 分類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陳櫟의 勤有堂隨錄, 陸友의 研北雜志, 郭翼의 雪履齋筆記, 沈括의 夢溪筆談, 張邦基의 墨莊漫錄, 張世南의 遊宦紀聞, 周密의 齊東野語와, 우리 나라 金昌熙의 譚屑, 韓用龜의 晚悟隨錄, 朴亮漢의 梅翁閑錄, 朴致遠의 雪溪隨錄, 沈清泉居士의 松泉筆譚, 南龍翼의 壺谷漫筆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類屬을 흔히 隨錄類로 고쳐서 分類하고 있

35) 註 30)의 引用文을 參照할것.

36) 王堯臣等編. 崇文總目 卷3. 子部 雜家類後敘.

3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17 子部27 雜家類敘.

38) 上揭書 卷123. 子部33 雜家類 雜說之屬後敘.

으므로 韓國書目を 涉獵할 때 특히 留意해 주기 바란다.³⁹⁾

넷째, 小說家類의 雜事 異聞 兩屬과의 分類限界도 또한 어려운 것에 該當되므로 그 가름에 細心을 다하여야 한다.

小說家類는

「蓋出於稗官 如淳曰……王者欲知閭巷風俗 故立稗官 使稱說之……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⁴⁰⁾

라 하였듯이, 王者가 閭巷風俗을 알기 위하여 稗官으로 하여금 民間의 小事와 小話を 記錄케 한데서 淵源된 것인 데, 뒤에는 街談과 巷語를 道聽塗說한 筆記의 性格을 띄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自體는

「書曰 狂夫之言 聖人擇焉 又曰 詢於芻蕘 是小說之不可廢也」⁴¹⁾

라 하였고, 孔子도

「雖小道必有可觀者焉」⁴²⁾

이라 하였듯이, 본시 王政의 必要에서 시초되었기 때문에 비록 狂夫의 말이며 小道라 할지라도 聖人이 擇할 바가 있고 또 불만한 것이 있다하여 讀史者들이 이를 參考함에 그 資料가 浩繁해졌다. 그 內容은

「凡有三派 其一敘述雜事 其二記錄異聞 其三綴輯瑣語也」⁴³⁾

와 같이 雜事 異聞 瑣語의 三種으로 區分되는 데,⁴⁴⁾ 그 中 雜事와 異聞이 雜史類와의 分類限界에 있어서 問題가 된다. 兩者中에서도 特히 雜事를 敘述한 것이 混雜을 일으키고 있으나, 內容에 있어서 歷代의 政事와 軍事關係를 事實대로 쓴 것은 雜史로 다루고, 「里巷間談詞章細故」⁴⁵⁾ 즉 巷間의 逸話나 小事를 情理에 사로잡힌 形式으로 筆記한 것, 이를테면 世說新語를 비롯한 大唐新語 何氏語林 堂齋漫錄 山居新語 玉照新志같은 것은 雜事의 屬에 該當된다. 그리고 異聞을 記錄한 것은 怪異하고 神奇한 內容을 筆記한 것으로서, 이를테면 神異經 搜神記 奇談隨錄 滑稽小傳 古今笑叢 集異記 博異記 大平廣記 稽神錄등인 바, 이러한 것은 모두 異聞의 屬에 該當하며 雜史와는 그 性格이 判異하다.

39)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東亞文化研究所, 1465.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서울, 文化財管理局藏書閣, 1972.

40) 班固. 漢書藝文志 諸子略 小說家後敘.

41) 王堯臣 等編. 崇文總目 卷3 子部 小說家類後敘.

42) 班固. 前揭書 諸子略 小說家後敘.

43)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40 子部50 小說家類敘.

44) 徐有槩撰 鏤板考에서는 說家類의 類門아래에 分類하고 있다.

45) 上揭書 卷141 子部51 小說家類 雜事之屬後敘.

6. 詔令·奏議類와 集部 制誥·表(章)奏類

詔令·奏議類는 上述한 바와 같이 正史의 參稽資料이며, 그 中에서도 紀傳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史料이다.

詔令은 본시 尚書의 「誓誥」에서 淵源된 것으로서 新唐書의 史部에서 처음으로 마련 된것이나,⁴⁶⁾ 그 後 黃虞稷의 千頃堂書目에 있어서는 이를 좃지 않고 그 制誥의 類門을 集部の 別集 다음에 新設하였다.⁴⁷⁾ 이 詔令은 天子 또는 王의 勅命 制誥 聖訓 諭旨 諭書 敦諭 綸音 策命 教書 璽書 赦文 批 判등을 包括하는 것으로서, 「此政事之樞機 非僅文章類也⁴⁸⁾」라 있듯이 國政의 樞機가 되는 點에서 一次的인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文章에 뜻을 두고 지은 것이 아닌만큼 文章이 잘 되었다고 해서 集部에 分類하는 것은 탐탁치 않은 分類方法이 되는 것이다. 傳統的인 四部法에 있어서 國政에 관련된 것은 史部에 分類하는 것이 온당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奏議는 臣下가 天子 또는 王에게 奏進하고 政事의 是非를 條議하여 올린 바의 奏疏 疏劄 上疏 封事 彈章 狀啓등으로서, 隋書經籍志에서 集部 아래에 文集과 並錄되다가⁴⁹⁾ 文獻通考에 이르러 集部內에 一類門이 처음으로 獨立 新設되었다.⁵⁰⁾ 그러나 漢書藝文志를 보면 「議奏三十九篇」「奏事二十篇」이 春秋 끝에 附入되어 있고,⁵¹⁾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도

「考漢志奏事十八篇 列戰國策·史記之間 附春秋末 則論事之文 當歸史部 其證昭然 今亦併改隸 俾易與紀傳互考焉」⁵²⁾

이라 있듯이, 傳統的인 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에 歸入하며 그 中에서도 특히 正史의 紀·傳 研究와 考證에 參考가 되는 資料이므로, 文章의 技法에 사로잡혀 集部에 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史鈔類와 關聯된 諸類屬

史鈔는 孔子가 史書 百篇을 刪取하였다는 것이 淵源이며, 그 뒤 一史를 專鈔 또는 衆史를 合鈔하는 作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類門의 新設은 隋書經籍志에 있어서도 實踐을 보지 못하고 雜史類에 並錄되는 程度가 고

46) 歐陽修. 唐書 卷58 藝文志48 史部 詔令類.

47) 黃虞稷. 千頃堂書目 集部 制誥·表奏類.

4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55 史部11 詔令奏議類條.

49) 長孫無忌 等撰. 隋書卷35 經籍志4 集部.

50) 馬端臨. 文獻通考 卷247 經籍考74 集部 章奏類.

51) 班固. 漢書藝文志. 六藝略 春秋.

52) 四庫全書總目提要 卷55 史部11 詔令奏議類條.

작이었다. 이를테면 衛颯 撰의 史要 10卷, 張溫 撰의 三史略 20卷, 葛洪 撰의 漢書鈔 30卷, 張緬 撰의 晉書鈔 30卷 등과 같은 一史 또는 衆史를 鈔錄한 것이 모두 雜史類에 混入되어 있다.⁵³⁾

宋代에 있어서는

「又增四例 通鑑總類之類 則離析而編纂之 十七史詳節之類 則簡汰而刊削之 史漢精語之類 則採摭文句而存之 兩漢博聞之類 則割裂詞藻而次之」⁵⁴⁾

와 같이, 一書 또는 衆書의 內容을 離析하여 그 精華部分을 事類別로 鈔成하고, 浩翰한 內容을 簡削하고, 精髓를 極한 文句를 採摭하고, 重要的 文藻를 分析 精擇하는등, 그 體例가 더욱 細分되어짐에 史鈔類의 量이 많아져서 마침내 宋史藝文志에 이르러 一類門이 新設되었다.⁵⁵⁾

이렇듯 史鈔는 어떤 底本에서 「博取約存」하거나, 「採摭精華」 또는 「刪除冗贅」하여, 「循覽」과 「檢尋」에 便케 하는 데 그 目的이 있지만, 한편 體列 또는 主題의 觀點에서 보면 同類의 것이 흠어지는 短點이 隨伴된다. 이를테면 麗史世家撮과 史記英選은 正史類에서, 朝鮮王朝實錄鈔錄은 編年類에서, 釋史抄는 紀事本末類에서, 各各 分離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까닭에 요저음의 古書整理에 있어서는 史鈔의 類門을 없애기도 한다.⁵⁶⁾ 이러한 경우는 鈔錄된 것의 底本이 分類되는 類屬에 모아 同一 著作의 接近을 꾀하거나, 그 鈔錄된 것의 體例 또는 主題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類屬을 알아 내서 分類하여야 한다.

8. 載記類와 關聯된 諸類屬

載記類의 淵源은 阮孝緒의 七錄에서 使用하였던 僞史로 소급하며,⁵⁷⁾ 隋書經籍志에 이르러서는 이를 霸史로 改稱하였다.⁵⁸⁾ 이것은 「或推奉正朔 或假名竊」한 僞朝의 國史임을 가름하기 위해 붙인 名稱이다.⁵⁹⁾ 그 後는 兩者를 兼用⁶⁰⁾ 또는 그 中 하나를 任意로 擇하여 使用해 왔으나, 四庫全書總目에 이르러 또 새로운 名稱인 載記類가 使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3) 長孫無忌 等撰. 隋書 卷33 經籍志2 史部 雜史類.

5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65 史部21 史鈔類敘.

55) 脫脫等修 宋史 卷203 藝文志156 藝文2 史部 史鈔類.

56)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史部 參照.

57) 阮孝緒. 七錄自序(廣弘明集 所收)

58) 長孫無忌 等撰. 隋書卷33 經籍志2 史部 霸史類.

59) 上揭書 霸史類敘.

60) 馬端臨. 前揭書卷200 經籍考27 史部 僞史·霸史.

그 敍에 의하면

「五馬南渡 中原雲擾 偏方割據 各設史官 其事蹟亦容泯滅……然年紀繇邈 文籍散佚 當時僭撰 久已無存 存於今者 大抵後人追記而已 曰霸 曰僞 皆非其實也……今採錄吳越春秋以下 述偏方僭亂遺蹟者 準東觀漢記·晉書之例 總題曰載記 於義爲允 惟越史略一書 爲其國所自作 僭紀紀年 眞爲僞史」⁶¹⁾

와 같이 王統의 正閏을 이은 나라를 一方的으로 割據하여 이르킨 亂의 事蹟을 記述한 것과, 王統의 正閏을 이은 나라의 紀年을 쓰지 않고 當時 自國이 만든 國號와 紀年을 僭稱한 나라의 歷史를 記錄한 것 따위를 僞史로 看做하고 함께 分類하였다.

이것은 名分爲主이며 事大를 스스로 强要하는 非合理的인 分類法임을 指摘하거나, 특히 우리 나라의 高麗史 朝鮮史略 朝鮮國紀를 비롯하여 安南志略 越史略등을 後者와 結附시켜 이에 附入시켰음은 실로 言語途斷이다.

따라서 이 類門은 오늘날 응당 削除되어야 하며, 그 史書의 編纂 體例 또는 內容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類屬을 신중하게 가려내어 適宜分類하여야 한다.

9. 職官類와 政書類

職官類에 대하여는

「前代官制 史多著錄……今所採錄 大抵唐宋以來一曹一司之舊事 與儆戒訓誥之詞 今釐爲官制·官箴二子目 亦足以稽考掌故 激勸官方」⁶²⁾

云云하였듯이, 歷代의 官制를 비롯한 一曹一司의 故事와 官吏의 儆戒訓誥類등이 이에 該當한다. 이를테면 朝鮮官職考 東國職官考 經世遺表 春官志 秋官志 奎章閣志 弘文館志 翰苑故事 春坊故事 內閣故事 桂坊故事등과 같은 官職 및 그 舊事와, 臨官政要 牧民心書 牧民大方 官居大要 官居要覽 百官箴 百僚全鑑등의 官箴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政書類는 六曹를 中心으로한 諸政事와 朝章類를 말하며, 通制 典禮 度支 軍政 法令 外交 選舉 考工등의 諸屬으로 細分된다.

그 中 通制의 屬에는 文物制度一般과 歷代制度가 包括되는 데⁶³⁾, 前者

6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66 史部22 載記類敍.

62) 上揭書 卷79 史部35 職官類敍.

63) 上揭書 卷81 史部37 政書類1 書目參照.

는 예컨대 우리 나라의 東國文獻備考 增補文獻備考 四千年文獻通考 文獻攷略 文獻撮錄등을 비롯하여 中國의 通典 通志 文獻通考 九通 十通 欽定清朝通典 欽定續通典 欽定清朝通志 清朝文獻通考 清朝續文獻通考등을 말하고, 後者는 우리 나라의 經濟六典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典錄通考등을 비롯하여 中國의 漢制考 唐會要 五代會要 明會典 欽定大清會典등을 들 수 있고, 이에 磻溪隨錄 百憲總要 萬機要覽 三政圖說 汪書등의 各種制度書가 包括된다. 특히 後者는

「一代之書 而兼六職之全書 不可分屬 今總而匯之 謂之通制」⁶⁴⁾

와 같이, 全代는 勿論 적어도 一代의 여러 制度를 總括하면서도 六職의 制章을 竝列하여 수록하고 있어야 함이 原則이다.

따라서 歷代의 官制만을 다루었거나, 一曹一司의 故事와 制章을 記錄한 것, 이를테면 東國職官考 宮內府官制 侍講院志 太常志 銀臺條例 宗親府條例 宮內部章程등은 이에 들지 않고 職官類에 該當한다는 點을 특히 銘心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關聯되어 꼭 言及해 둘 것은, 첫째,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類등을 古代法典이라 하여 四部法에 있어서 法家類에 넣은 경우도 없지 않은 데 이것은 큰 잘못이며 그 內容이 既述한 바와 같이 朝鮮朝 國政에 관한 六曹 所管의 制典인 點에서 이에 該當하고, 둘째, 文獻備考와 같은 資料를 傳統的인 四部法에 있어서 類書類에 分類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文物制度를 總括한 會通之書이기 때문에 政書類 通制의 屬에 該當하는 것임을 竝列하여 強調해 둔다.

10. 政書類 典禮之屬과 禮類

政書類의 典禮之屬은 春官이 所掌하는 帝制와 朝章⁶⁵⁾ 말하자면 一國의 尊王中心의 典禮인 點에서, 經學의 禮類 또는 民家의 禮俗과 그 性格이 判異하다.

一國의 尊王中心의 典禮에는 吉嘉賓軍凶의 五禮儀와 其他 各種의 典禮에 관한 것, 즉 우리나라의 國朝五禮儀 宗廟儀軌 進宴聽儀軌 嘉禮都監儀軌 儲宮冊禮都監儀軌 皇帝即位大禮都監儀軌 國葬都監儀軌등을 비롯하여 中國의 政和五禮新儀 大唐開元禮 大金集禮 明集禮 明典禮志 王國典禮 廟學典禮 學典 祖陵紀略 歷代貢舉志 謚法通考 改元考등이 包括된다.

6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81 史部37 政書類 通制之屬後敘.

65) 上揭書 卷82 史部38 政書類 典禮之屬後敘.

이에 대하여 禮經에 있어서의 冠 婚 喪 祭 相見 既夕 宴 聘 公食 覲 鄉 飲 鄉射 등의 諸禮는 선비와 諸侯가 지켜야 할 日常의 禮를 다룬 儀禮에 該當한다.

儀에 관한 書中 處理가 가장 까다로운 것이 儀注의 書이다. 그 儀注는 「公私儀注 隋志皆附之禮類 今以朝廷制作事關國典者 隸史部政書類中 其私家儀注 無可附麗 謹彙爲雜禮書一門 附禮類之末」⁶⁶⁾

과 같이 公私의 것으로 區分할 수 있는 데, 兩者가 모두 隋書經籍志에 있어서는 經部 禮類에 附入되었다.⁶⁷⁾ 그러나 公的인 儀注는 朝廷이 制定한 國典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것이 不當해서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既述한 바와 같이 政書類 典禮之屬에 分類하였다.

한편, 私家의 儀注는 書儀 家禮 鄉禮 등의 民家 禮俗으로서 經部 禮類와는 性格이 다르니 이를 바로 그 禮類에 넣는 것도 妥当한 方法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天津圖書館藏書目錄에 있어서와 같이 이를 政書類 典禮之屬에 並入시키는 것은 더욱 不適當하다.⁶⁸⁾

이와 같이 私家의 儀注는 傳統的인 四部法에 있어서 그 分類處가 마땅치 않음이 事實이나, 兩者中 不得已 어느 하나에 人爲的인 處理를 한다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와 같이 經部 禮類末에 雜禮之屬을 附設하여 分類하는 것이 次善의 方法이라 여겨진다.

要컨대, 儀注의 書는 朝廷이 制定한 것인가 또는 私家에 의한 民家 禮俗의 것인가를 가름하여, 그 中 前者는 政書類 典禮之屬에 그리고 後者는 經部禮類末에 雜禮之屬을 附設하여 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政書類 軍政之屬과 兵家類

兵에 관한 書는

「軍伍戰陳之事 多備於子部兵家中 此所錄者 皆養兵之制 非用兵之制也」⁶⁹⁾云云한 바에 의해 養兵之制와 用兵之制의 兩系로 大別할 수 있다.

前者는 歷代의 兵制 兵馬 馬政 軍營 軍屯 軍糧 軍庫藏 등 歷代의 軍政에 관한 것을 말하며, 高麗兵馬制度 李朝馬政史 訓局階錄 訓局事例撮要 扈衛

6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22 經部22 禮類 雜禮書之屬後敘.

67)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32 經籍志1 經部 禮類.

68) 天津圖書館藏書目 32卷 集部附錄·叢書總目各 1卷, 譚新嘉, 韓梓雲共編. 民國 2(1913). 史部 政書類 雜禮.

69) 四庫全書總目提要 卷82 史部38 政書類 軍政之屬後敘.

廳膽錄 親軍營膽錄 湖南兵管管誌 摠戎廳膽錄 禁衛管事例 軍需色重記 軍器色重記 本營各庫重記등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의 資料는 兵에 관한 書中 養兵之制에 該當하는 것이므로 그 모두를 史部 政書類 軍政之屬에 分類하여야 한다.

後者는 兵의 權謀 形勢 陰陽 技巧등을 다룬 古代 兵家の 書와⁷⁰⁾ 後代의 著述인 兵法 또는 武術 武器에 관한 것을 말하며, 六韜 孫子 吳子 司馬法 尉繚子 黃石公三略 三略直解 素書 天一兵法 鮑子兵法을 비롯한 後代 著述인 兵將說 兵學通 兵學指南 陣法 陣說 制勝方略 演機新編 武藝圖譜通志 行軍須知 神器秘訣 火器圖 兵機類纂 練閱火器陣紀 練兵實紀 白砲裝放法등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奇妙하게 兵을 運用하고 戰略을 세워 攻守戰에서 必勝하는 戰法을 論하며, 兵器의 操作 訓練 및 그 製造術까지 言及한 것은 用兵之制에 該當하는 資料이므로 子部 兵家類에 分類하여야 한다.

12. 政書類 法令之屬과 法家類

法에 관한 典籍도

「法令與法家 其事相近 而實不同 法家者私議其理 法令者官著爲令者也」⁷¹⁾라 있듯이, 法令과 法家の 書가 있어 相近하면서도 其實 不同하니 그 가름에 錯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法家の 書란 古代人이 法理를 私議한 것으로서 본시 古代의 理官에서 淵源된 刑名優位主張의 學說이며, 商鞅의 信賞必罰과 申不害의 權謀術數가 代表인 祖論이 된다. 刑名優位의 主張說은 刑罰을 嚴正하게 다스려 名分을 바로 잡음을 第一主義로 삼는 說인데, 儒者들은 이에 대하여

「無教化 去仁愛 專任刑法 而欲以致治 至於殘害至親 傷恩薄厚」⁷²⁾

라 하여 反論을 提起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가운데에서도 그 遺篇이 傳流 披覽되어 法戒에 兼資되었으며, 그 結果 管子 鄆析子 商子 申子 慎子 韓非子등이 오늘에까지 傳遺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後世人의 著述 이를테면 管子權 韓子迂評 法家哀集 刑統賦 棠陰比事같은 것도 出現되었다.

이와 같이 東洋 古代의 法理를 私議한 諸書는 官著의 法令과 性格이 다르므로 그 모두가 子部 法家類에 該當한다.

70) 班固. 漢書藝文志 兵書略 書目 및 後敘.

7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82 史部38 政書類 法令之屬後敘.

72) 班固. 前漢書 諸子略 法家者流後敘.

한편, 法令이란 歷代의 官署에서 制定 또는 輯錄한 律令 法典 詞訟 刑獄 推鞠類를 指稱하며, 이에 官이 法을 執行함에 있어서 參考가 되는 私撰이 아울러 包含된다.⁷³⁾ 이를테면 唐律 大明律 大清律 御定欽恤典則 公法會通 舊韓國法令 法規類編 詞訟類聚 審理錄 檢案 奉教嚴辨錄 義禁府鞠案 推鞠日記 供草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의 法令關係書는 前揭한 바의 法理 私議書와는 性格이 判異하므로 史部 政書類 法令之屬에 歸入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도 言及한 바 있는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類는 官署의 古代法典이라는 觀點에서 이곳에 分類해도 無妨할 것으로 여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內容은 六曹 所管의 制典이기 때문에 여기 보다는 政書類의 通制之屬에 列入시키는 것이 四部法에 있어서는 最善의 方法임을 添言한다.

結 語

以上에서 考察한 바를 要言하면, 1) 史部의 淵源 및 性格에 있어서, 1) 史記類가 書目上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前漢末 劉歆 所撰 七略의 六藝略 春秋 끝에 附入된 것이 그 濫觴이고, 2) 이것이 그 뒤 史書의 著撰이 類繁해짐에 따라 魏 鄭默 所撰의 中經簿에 근거 晉 荀勗이 更撰한 現傳의 新簿에서 獨立 類門으로 처음 나타나며, 3) 그 後 隋志에 이르러 經史子集의 名稱과 性格이 確定됨에 따라 四部法中 第二의 位置를 확고하게 구축하였고, 4) 四庫全書總目에 이르러 그 內容이 細分 展開됨과 아울러 各類屬의 定義가 整然하게 規定되었으며, 5) 史部의 性格이 正史의 紀傳體를 中心으로 한 體例 爲主의 展開임을 言及하였다.

分類 限界의 가름 問題에 있어서는 1) 史部를 中心으로 그 自體의 類屬 相互間은 勿論 他部의 그것과 關聯이 있거나 相似한 것을 들어 그 內容과 性格을 比較 考察하여, 2) 分類의 限界性을 밝힘과 同時에 具體의 例證을 提示해서 3) 分類의 實際에 대한 基礎知識을 부여하고 4) 多樣하게 組織된 各種의 書目에서 文獻을 손쉽게 檢索해 낼 수 있도록 꾀하였다.

특히 史部가 四部法에 있어서 中樞部임을 考慮하면 史部를 中心으로 한 關聯된 諸類屬의 分類限界 研究는 其實 四部法에 있어서의 分類의 難問題를 거의 살피 본 셈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것은 宋의 鄭樵가 일찌기

73)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서울, 文化財管理局藏書閣, 1972. pp. 417~422 律令·推鞠.

分類上의 難題로서 傳記 雜家 小說 雜史 故事의 五類之書⁷⁴⁾를 들었던 바, 그것이 史部의 類門이 아니던 史部와 關聯이 있는 類門들이며, 그 中에서도 가장 淆亂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雜史類; 雜家類의 雜說, 小說家類의 雜事 異聞이 모두 本題에서 舉論되었기 때문이다.

鄭樵가 말한 傳記와 故事에 관하여는 여기서 言及하지 않았으나, 그 中 傳記는 史部 傳記類의 別錄(傳) 總錄(傳) 또는 必要에 따라 子部의 各 類門아래에 分類하되, 그 內容이 恍惚無徵하거나 小說家등에 의해 神奇하고 興味있게 潤色되어진 것은⁷⁵⁾ 小說家類에 處理하면 된다. 故事는 본시 隋志에 마련 되었던 舊事의 類門에 該當하는 것으로서⁷⁶⁾ 四庫總目에 있어서는 이를 削除하였으니, 朝政과 軍國大事에 관한 舊事中 「足以存掌故 資考證 備讀史者之參稽」⁷⁷⁾가 되는 것은 雜史類에 넣고, 그 內容이 荒唐無稽하거나 「里巷間談詞章細故」⁷⁸⁾하여 鄙俗한 것은 小說家類 아래에 處理한다는 基本原則만을 이에 追記해 둔다.

그리고 끝으로 四部法 全般에 걸친 餘他的 分類限界 問題에 관하여는 機會가 있는 대로 續藁하여 發表할 豫定임을 附言한다.

74) 鄭樵. 通志略 校讎略 編次之說論篇.

75) 穆天子傳 飛燕姊妹傳等の 內容參照.

76) 長孫無忌 等撰. 隋書卷33 經籍志2 史部 舊事類.

7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51 史部7 雜史類校.

78) 上揭書 卷141 子部51 小說家類 雜事之屬後敘.

Problems concerning Classification of Historical Part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cheme

by Hye-Bong Chōn

(ABSTRACT)

Nowadays, the studies of Orientalology and Koreanalogy have been developed remarkably. Consequently, the works of commentaries, criticism, translations and the various studies on the matter have been published in quantiti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uch progress on the above mentioned fields of learning in the future.

In this situation, the paper is intended for the professional librarians serving in the field to be familiar with the classification of historical part of the traditional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cheme(四部分類法). The following topics are mainly dealt with.

- 1) Studying the origins and characters of classification of historical part of the classification Scheme.
- 2) Comparing the correlations of division and section of historical part as well as those of other parts of the classification scheme.
- 3) Explaining the limitation of classification relating to others while presenting the examples to aid for understanding.
- 4) Giving the principal knowledge on the practice of classification.
- 5) Attempting for the librarians to make literatures more easily usable among the various systematized bibliographie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